

2025

자동차운전학원 전문학원 관계법령 법|시행령|시행규칙|별표

엠북 자격증

공부혁명!
mbook.kr

- ✦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✦ 휴대폰에 저장해 즉시 사용
- ✦ 최근 법 개정 내용 반영
- ✦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별표 종합
- ✦ 1시간 10분 완성

도서명 : 전문학원 관계법령

ISBN : 979-11-94286-58-5

발간일 : 2025-01-08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hanmail.net

정가 : 11,000원



전문학원 관계법령

[목차]

- 제1장 교통안전교육(p7)
- 제2장 운전면허(p18)
- 제3장 자동차운전학원(p68)
 - 제1절 학원(p68)
 - 제2절 전문학원(p82)
 - 제3절 학원등(p102)
 - 제4절 행정처분(p134)
- 제4장 보칙·벌칙(p147~154)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 글자는 법

붉은 글자는 시행예정

초록색 글자는 최근(1~2년내) 개정 내용

보라색 글자는 시행령

갈색 글자는 시행규칙

[용어/약어]

- 교육기관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
- 학원은 자동차운전학원
- 전문학원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
- 교육강사는 교통안전교육강사

- 검정원은 기능검정원
- 강사등은 학원/전문학원 강사, 전문학원
검정원
- 기능교육은 자동차등 운전^에 필요한 기능과
도로에서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
- 면허증은 운전면허증
- 조건부면허(조건부 운전면허)는 음주운전
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
- 교통사고는 차, 노면전차 운전 등 교통으로
인해 사람 사상, 물건 손괴
- 승용차는 승용자동차
- 승합차는 승합자동차
- 화물차는 화물자동차

- 특수차는 특수자동차
- 원동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
- 긴급차는 긴급자동차

-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
- 청장은 경찰청장
- 시도청장은 시도경찰청장
- 부령은 행정안전부령
- 지자체장은 시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
- 경찰은 경찰공무원
- 음주는 술에 취함
-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- 거부등은 거부, 방해, 기피

제1장 교통안전교육

도로교통법 73~79조

1. 교통안전교육

가. 내용

1) 운전면허 받으려면 응시 전 시청각교육 등으로 다음 교육 1시간 받아야 함

- 운전자 기본예절
- 도로교통 법령/지식
- 안전운전 능력
- 교통사고 예방/처리

- 어린이/장애인/노인 교통사고 예방
- 친환경 경제운전
- 긴급차에 길 터주기
- 교통안전 확보

2)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받은 자,
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학과교육 수료자는 교육
불요

나. 특별교통안전교육

- 공단이 각각 3~48시간 실시
- 강의, 시청각교육, 현장체험교육 등

1) 특별교통안전 **의무**교육

가) 대상

a) 면허 취소된 자로서 면허 받으려는 자
- 단, 적성검사 받지 않거나 불합격자, 면허
자진 반납자 제외

b) 면허 정지기간 끝나지 않은 자

c) 면허 취소나 다음 사유로 인한 면허
정지처분 면제 1개월 미경과

- 음주운전

- 공동 위험행위

- 난폭운전

- 고의/과실로 사고

- 자동차등 이용 특수 상해/폭행/협박/손괴

d) 면허 정지 받게 되거나 받은

초보운전자로서 정지기간 미종료

e)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로
벌점 받은 날 1년내

나) 면허 취소된 자 이외는 부득이한 사유가
있으면 연기 가능

- 연기사유 소멸 30일내 이수 요

2) 특별교통안전 **권장**교육

- 권장교육 받기 전 1년내 해당 교육

받지않은 다음 사람이 시도청장에 신청시
받을 수 있다

·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 정지 받거나
정지 가능성 있는 자

-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받은 자
- 운전면허 받은 자 중 교육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

다. 긴급차 운전자

- 신규 교육은 3시간,
- 정기 교육은 3년마다 2시간 이상
- 공단이나 소속 국가기관/지자체가 실시

라. 75세 이상

- 1) 응시 전(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은 갱신기간내) 교육 받아야 함
- 2) 교육내용
 - 노화와 안전운전

- 약물과 운전
- 인지능력별 대처
- 교통 법령

마. 조건부면허 받으려는 자

- 응시 전 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교육 받아야 함(24년 10월 시행)

2. 교통안전교육기관

가. 지정 등

- 1)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시도청장 지정 기관이 교통안전교육

2) 시도청장은

가) 다음 기관이 시설/설비, 강사 등 요건

갖추어 신청시 지정하고 지정증 발급

- 자동차운전학원
- 공단과 그 지부/지소, 교육기관
-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
- 제주도, 시, 군, 자치구 운영 교육시설

나) 다음은 지정못함

- 지정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
설립/운영자가 취소 3년내 설립
- 지정 취소 3년내 같은 곳에서 설립

나. 운영책임자

-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(이하 **교육기관장**)이 교통안전교육강사(이하 **교육강사**)를 제외한 직원 중 임명 가능
- 교육기관장이나 운영책임자는 교육강사 지도감독, 교육업무 공정 관리

다. **교육강사**

1) **자격기준**

- 청장이 발급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 소지
- 도로교통 행정/교육 업무 **2년** 및 **공단 실시** 교육강사 자격교육 이수

2) **결격사유**

가) 다음 죄로 금고 이상 집행 종료/면제 **2년**

미경과, 집행유예 중

-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/중과실 치사상
- 도주차량 운전자
- (음주/약물운전) 치사상
-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
- 성폭력범죄
-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나) 자동차 운전면허없거나 초보운전자

- (참고) 20세 미만은 24년 8월부터 결격 아님

3) 교육기관장은 교육강사 아닌 자가 교육하게 하면 안됨